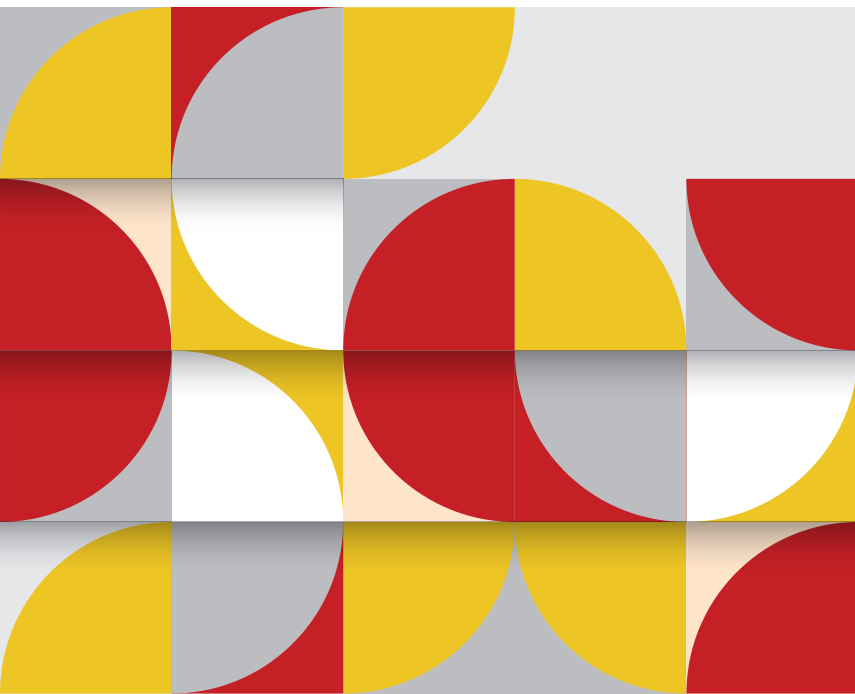


발간번호

KOTRA18-062

2017

한-베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FTA 활용 역량강화



사업 주관

기획재정부

사업 기획 및 관리

윤원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김형욱 (KOTRA 개발협력실장)

장덕환 (KOTRA 개발협력실 대리)

김자현 (KOTRA 개발협력실 연구원)

사업 수행

신한관세법인 (대표 장승희 관세사)

현지 협력기관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KOTRA 하노이 무역관, KOTRA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세관총국

한국 연구진

최대규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연구책임)

성기창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박소라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홍모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베트남 연구진

Le An Hai, Deputy Director General, Asia-Africa Market Department, MOIT

Van Thi Mai Chi, Official, Asia-Africa Market Department, MOIT

Nguyen Xuan Dong, Lecturer, University of Economic and Business, Viet Nam National University

목차

Chapter 1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범위 및 기대효과	4
Chapter 2 한베 FTA 수출입 활용률 분석	5
Chapter 3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9
1.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11
2.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	12
3.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의 시사점	14
Chapter 4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시범 컨설팅	17
1. 시범 컨설팅 목적	19
2. 시범 컨설팅 대상	19
3. 내용 및 주안점	19
4. 시범 컨설팅에 대한 결과 분석	20
5. 시범 컨설팅의 시사점	21

Chapter 5 한베 FTA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의 비교 분석	23
1. 한국의 FTA 관련 법령 체계	25
2. 베트남의 FTA 관련 법령 체계	25
3. 한국과 베트남 FTA 관련 법령 비교분석	25
4. 한베 FTA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 시스템 및 제도	26
 Chapter 6 결 론	 29
1. 한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의 FTA 활용 환경 비교	32
2.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측면 방향 제시	34
3.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측면 방향 제시	36

CHAPTER

0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기대효과

Chapter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베트남의 對-韓 수출은 베트남 전체 교역국 중 4위, 對-韓 수입은 베트남 전체 교역국 중 2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과 베트남은 양국 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양국 간 수출입 교역량은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 양국 간 수출입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반해 한베 FTA 활용률은 타 FTA 대비 FTA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이에 대응하여 베트남 기업이 겪는 FTA 활용 애로사항 파악 등 활용률 저조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향후 기업들이 한베 FTA를 통한 추가 관세 양허 혜택 및 사후적용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베 FTA 활용률 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FTA 활용의 현황을 분석하고, 활용의 애로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과 베트남의 FTA 활용 환경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베트남 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 베트남 기업의 내부적 FTA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FTA 활용 프로세스를 수립하

고 시범 컨설팅을 실시한다.

- 한베 FTA 활용 증대 및 베트남 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및 기업 측면에서의 활용 증대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기대효과

가.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한베 FTA 활용역량 강화에 대한 연구로서 한베 FTA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타 FTA¹로 그 범위를 확장 설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나. 연구의 방법론

- (1단계) 한베 FTA 활용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 (2단계) 베트남 기업 대상 한베 FTA 활용 설문조사 → (3단계) 베트남 현지기업 대상 FTA 컨설팅 실시 → (4단계) 베트남 FTA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 (5단계) 베트남 기업 FTA 활용 역량 강화 환경 정의 및 방안 도출 → (6단계) 베트남 정부 및 기업대상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 포럼 개최

다. 연구의 기대효과

- 안정적인 FTA 활용률 증대를 위한 기업 내부역량 제고
- 베트남 기업의 한베 FTA 활용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
- 한베 FTA 활용 증대를 위한 법령·제도적 환경 개선 방안 도출
- 베트남 기업의 FTA 활용 과제 도출

¹ 2018년 기준, 한국과 베트남이 현재 체결, 발효중인 FTA

CHAPTER

02



한베 FTA 수출입 활용률 분석

Chapter

2

한베 FTA 수출입 활용률 분석

- 한베 FTA 발효전후 양국 수출액 증가 대비 한베 FTA 활용률 저하
 - 한베 FTA가 발효된 '15년 12월 전후 수출액 증가 추이를 통해 對-韓 수출의 증가 요인으로 한베 FTA의 발효를 꼽을 수 있겠으나, 수출액 증가 대비 여전히 한베 FTA 활용률이 낮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 교역량 증가에 발맞추어 보다 많은 베트남 수출기업이 FTA 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베 FTA 활용률 점진적 증가 추세
 - 한베 FTA 활용률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에 더불어 한베 FTA 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FTA 활용의 애로사항 파악 등을 통해 기업 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타 FTA 대비 한베 FTA의 저조한 활용률
 - 한베 FTA가 한베 FTA 이외의 협정에 비해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1) 한아세안 FTA 활용의 익숙함 2) 기관발급 절차의 복잡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활용률 저조 이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기업/ 정부 차원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CHAPTER

03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1.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2.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
3.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의 시사점

Chapter

3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1.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가. 실태조사 목적

- 베트남에 소재하는 기업들의 C/O 발급 및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실무적인 업무 절차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함으로써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FTA 활용 현황 및 활용 장애 요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 실태조사 대상

- FTA 활용 또는 활용 예정에 있는 기업으로서 베트남 기업 7개 사, 베트남 진출 외국 기업 7개사를 선정하여 방문 (북부: 9개 사, 남부: 5개 사)

□ 실태조사의 방법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기업 방문 인터뷰 형식(1차 및 2차 실태조사로 구분)

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FTA 활용 시 애로사항

☐ C/O 발급 신청 시 서류 직접 제출

- ECOSYS를 통해 온라인으로 C/O 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C/O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C/O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애로사항이 있다.

☐ C/O 발급사무소의 접근성이 낮음

- 기업들은 C/O 발급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 내 전담 인력을 두거나 대행업체를 통하여 C/O 발급을 진행하고 있는 바, C/O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부담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 수출 상대국의 FTA 협정세율 확인의 어려움

- FTA 활용 실익을 파악하기 위해 수출상대국의 협정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 창구가 부족하여 한국 거래처의 정보에 의존하거나 신규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할 위험도 있다.

☐ 수입국과 수출국의 HS Code 불일치

- 수입국과 수출국의 HS Code 불일치로 인하여 수입국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의무

- 베트남에서는 수입통관 시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C/O 원본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어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2.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 목적

- 베트남에 소재하는 기업들의 FTA 활용 현황, 한베 FT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FTA 활용 시 애로사항 및 FTA 활용 증대를 위한 베트남 정부기관의 지원 유무 파악과 향후 지원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함

나.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 설문조사 대상

- 베트남 현지 기업 및 베트남 진출 외국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 설문조사 방법

- ① 전반적인 FTA 활용현황 파악을 위한 1차 온라인 설문지 조사, ②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활용 애로 사항 파악을 위한 2차 우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1) FTA 활용 현황

- 설문에 응답한 업체 중 약 72%가 현재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FTA 활용 기업 중 수출입시 모두 FTA를 활용하는 업체는 50%에 해당한다.

- FTA 활용 중인 것으로 응답한 기업 중 한베 FTA만을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4%로, 한아세안만을 활용하는 기업(28%) 및 한아세안 FTA와 함께 한베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31%) 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인다.

2) 수출 시 FTA 활용 애로사항

- 수출 시 FTA를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기업 중 약 27%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을, 약 20%는 투입 원재료의 품목분류 어려움을 C/O 발급 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3) 수입 시 FTA 활용 애로사항

- 수입 시 FTA를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기업 중 약 27%는 거래처의 C/O 발급 협조가 부족하여 수입 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외 사후검증의 부담감 및 베트남 세관의 과도한 증빙자료 요청이 각각 15%로서 2순위 애로사항으로 파악된다.

4) 기타 FTA 활용 시 경험한 이슈(애로사항)

- ☐ 그 밖에 FTA를 활용하는 설문응답 기업 중 약 41%에 상당하는 기업들이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 불일치에 따른 이슈를 경험하였다.

5) 베트남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지원

- ☐ 설문에 참여한 전체 기업 중 약 49%가 정부기관으로부터 FTA 활용과 관련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 또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목으로는 수출입 절차상의 지원(약 37%)과 한베 FTA 적용을 위한 정보 제공(약 32%)이 각각 1위, 2위를 차지하였다.

3.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의 시사점

가. 전자적 방식의 C/O 발급 절차의 구축 필요성

- 현재 ECOSYS에 C/O 발급 관련 제출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온라인 업로드 인식도가 낮고,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더라도 발급사무소에 방문해야지만 C/O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업로드에 대한 유인효과가 낮음)
- ECOSYS를 기반으로 하여 C/O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뿐만아니라 C/O 발급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나. 서류 보관 의무에 대한 인식도

- 실태조사 대상기업들의 C/O발급 관련 서류보관의무 인식도는 높은 편이나, 여전히 원산지 판정이 수기로 이루어진다는 점 및 소수의 담당자가 서류보관을 페이퍼로 하고 있다는 점 등 휴먼 에러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
- 사후 검증에 따른 추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 및 서류 보관을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다. 수출상대국의 협정세율 확인을 위한 양 국가 간 상호합의 필요성

- 수출상대국의 협정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웹사이트의 업데이트 미흡, 언어차이에 따른 상대국 웹사이트 검색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수출상대국 협정세율을 확인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 궁극적으로는 체약상대국 간의 합의를 통해 서로의 협정세율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단일 창구 구축이 필요하다.

CHAPTER

04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시범 컨설팅

1. 시범 컨설팅 목적
2. 시범 컨설팅 대상
3. 내용 및 주안점
4. 시범 컨설팅에 대한 결과 분석
5. 시범 컨설팅의 시사점

Chapter

4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시범 컨설팅

1. 시범 컨설팅 목적

- ☐ FTA 既 활용 기업에는 FTA 활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 파악,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원산지관리 시스템 소개하고자 한다.
- ☐ FTA 활용 준비 기업에는 FTA 활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활용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시범 컨설팅 대상

- FTA 既 활용 기업 중 한베 FTA 주요 교역품목인 섬유·의류 기업 1개 사
- FTA 활용 예정 기업으로 한베 FTA 수출유망품목인 농수산물 기업 1개 사

3. 내용 및 주안점

- ☐ FTA 활용(또는 활용 준비) 적정성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 원산지 판정 및 관련 서류보관의 적정성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 FTA 활용(또는 활용 준비) 시 애로사항 및 지원이 필요한 부분 확인
- ☐ 한국의 원산지관리 시스템 도입 가능성 확인

4. 시범 컨설팅에 대한 결과 분석

가. 베트남 북부(하노이) 기업: Garco 10 Corporation (베트남 기업)

□ 컨설팅 제공 내용

- 현재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요 수출물품 선정 및 해당 물품의 HS Code 적정성, 한베 FTA 활용 실익 여부,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안내, 원산지 판정 절차 및 서류보관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주요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한국의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연함으로써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편의성과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였다.

□ 위험요소 진단

- 원산지 판정을 수기로 진행, C/O 발급 관련 서류를 하드카피로 보관, 원산지판정 담당자 1인에 모든 절차를 의존하고 있다.

□ 컨설팅 효과

- 원산지 판정 및 C/O 서류 보관을 수기로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 담당자의 퇴사, 휴면에러 등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기업 전체의 사후검증 위험도가 높아지게 될 수 있음을 인식을 제고하였다.
- 전사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나. 베트남 남부(호치민) 기업: Green Field Farm (베트남 기업)

□ 컨설팅 제공 내용

- 직접 수출 경험이 없고 추후 직접 수출 및 FTA 활용 준비 중인 기업으로서 생산하는 품목의 HS Code 결정, 원산지 결정기준 및 양허세율 확인을 통해 FTA 활용 실익 여부에 대한 컨설팅 제공하였다.
- 주요 수출예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한국의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 판정 및 서류관리의 시스템화 필요성 안내하였다.

□ 컨설팅 효과

- FTA 활용과 관련된 기초적인 이해
- 주요 수출품목의 HS Code 확인 및 한베 또는 한아세안 FTA 활용 실익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 진행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었다.
- 원산지 판정 및 서류보관의 시스템 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였다.

5. 시범 컨설팅의 시사점

가.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시범 컨설팅 대상 기업들의 원산지 판정 및 C/O 서류 보관 의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모든 절차가 수기, 하드카피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검증에 완벽히 대비할 만큼 체계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을 리스크가 높다.
- 기업 내부적인 사후 추징의 리스크를 낮추고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나. 계약상대국의 협정세율 확인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및 자료 제공

-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FTA 활용 실익 여부를 보다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수출상대국의 협정세율 및 MFN 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DB나 웹사이트 등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다. 체계적인 FTA 원산지 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필요

- 일반적인 HS Code에 대한 이해 및 사후검증에 대한 인식도가 FTA 활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이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FTA 원산지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CHAPTER

05

한베 FTA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의 비교 분석

1. 한국의 FTA 관련 법령 체계
2. 베트남의 FTA 관련 법령 체계
3. 한국과 베트남 FTA 관련 법령 비교분석
4. 한베 FTA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 시스템 및 제도

Chapter

5

한베 FTA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의 비교 분석

1. 한국의 FTA 관련 법령 체계

- FTA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의 3단 체계로 구성되며, 시행규칙 하에 고시, 기타 지침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 FTA 특례법은 각 협정의 이행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2. 베트남의 FTA 관련 법령 체계

- 법률(QH)-시행령(ND)-시행규칙(TT)의 3단 체계로 구성되며, 시행규칙 하에 고시(QD), 지시(CT)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 한국의 FTA 특례법과 같은 통일된 FTA 관련 법령은 없으며 각 협정에 대한 각각의 시행규칙으로 협정 이행 관련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3. 한국과 베트남 FTA 관련 법령 비교분석

- 한국과 베트남의 FTA 관련 법령 분석(일부 발췌)

구분	한국의 FTA 관련 법령	베트남의 FTA 관련 법령
HS Code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운영 - 관세법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운영 - 38/2015/TT/BCT 및 08/2015/ND-CP
원산지 판정	모든 협정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 FTA 특례법, 동법 시행규칙(별표)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 40/2015/TT-BCT
원산지 증명	■ 모든 협정에 공통되는 절차 - FTA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원산지 증명서 서식 -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 일반적인 C/O 발급절차 - 31-2018-ND-CP ■ 한베 C/O 기재사항, 유효기간, 서식 등 - 40/2015/TT-BCT
협정관세 적용	■ 각 개별 협정의 협정관세율 - FTA 특례법 시행령 ■ FTA 사후적용 - FTA 특례법 고시	■ 한베 FTA 양허세율 - 149/2017/ND-CP ■ 한베 협정관세 사후적용 - 40/2015/TT-BCT

□ 법령 비교 분석의 시사점

- 원산지확인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등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한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한국의 법령에서는 모든 협정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을 위주로 법을 구성하고, 협정별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별표 등에 별도로 계기하고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 각 개별 FTA 협정 규정 중 공통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을 법으로, 세부규정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하여 모든 FTA 협정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따라서 FTA 체결 시마다 절차법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4. 한베 FTA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 시스템 및 제도

가. 시스템적 측면

□ 온라인 C/O발급 시스템

-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FTA 활용시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C/O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인 바, 한국에서의 전자적 방식의 C/O 발급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 원산지관리 시스템

- 베트남 내 많은 기업들이 수기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고 있어 판정 결과 값에 대한 오류

발생 리스크가 크며, 서류보관도 페이퍼로 보관하고 있어 유실 및 분실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정확한 판정 및 판정 능력과 관련 서류를 시스템 상 저장할 필요가 있다.

□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 (EODES²)

-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증명서의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상호 통보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하다.

□ 수출 상대국 관세율 확인 사이트 구축

- 각 협정별로 수출 관세율을 HS Code, 한글 품목명, 영문 품목명으로 조회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으며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FTA 활용 혜택 확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다.

나. 제도적 측면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기업 자체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갖추게 하고 C/O 발급 절차를 간이하게 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FTA 활용 증대에 기여

□ 중소기업 원산지확인서 세관장사전확인 제도

-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사전에 확인해줌으로써 신뢰성 있는 FTA 활용 가능성 증진

□ 기타

- 그 밖에 원산지 확인서 간편 인정 제도,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이 발급 제도, 국내제조 포괄확인서 제도 등을 통해 원산지 판정 및 C/O 발급 절차를 간이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음

² 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CHAPTER

06

결 론

1. 한국기업과 베트남 기업의 FTA 활용 환경 비교
2.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측면 방향 제시
3.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측면 방향 제시

Chapter

6

결론

-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이 연구 단계별로 파악된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의 애로사항을 정리하였으며, 해당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부 및 기업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단계	한베 FTA 활용 애로사항	해결방안	
		정부측면	기업측면
실태조사/ 설문조사	• C/O 발급시 발급기관 직접방문 제출 필요	• C/O전자발급제도 도입	• 온라인C/O발급에 대한 숙지
	• C/O 발급사무소의 부족	• C/O 발급 사무소의 증설	• C/O 발급 전문 대행업체 활용
	• 수출상대국의 관세율 확인의 어려움	• 수출세율 조회 가능 DB구축 • 수출세율 조회 웹사이트 운영	• 거래상대국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
	• 수출입국간의 HS Code 불일치	• C/O관련 업무처리지침 등 업무가이드제공 • C/O관련 규정 홍보 필요	• FTA 관련법령, 규정에 대한 숙지 • FTA 전담직원 배치
컨설팅	• 원산지 시기 판정	•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방안 검토	•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 업무매뉴얼 구비
	• 원산지 관련 자료보관		
법령/제도 분석	• FTA 기준법의 부재	• 타국가 법령 검토 및 법령 도입방안 검토	• FTA 관련법령, 규정에 대한 숙지 • FTA 전담직원 배치
	• FTA 관련 제도 미비	• FTA 관련 제도 도입방안 검토	• FTA 관련 지원제도 숙지

1. 한국기업과 베트남 기업의 FTA 활용 환경 비교

구분	한국	베트남
FTA 발효 현황	• 15개 FTA(베트남 외 유럽, 미국, 아세안, 중국 등)	• 10개 FTA (한국 외 아세안, 중국, 일본 등)
원산지 발급방식	• 기관 / 자율 발급	• 기관 발급
발급 기관	• 세관 / 상공회의소 (전자발급신청 및 발급)	• MOIT (전자발급 신청 및 방문 발급)
원산지관리 주체	• 기업 내부/외부 전문가	• 주로 기업 내부 관리
원산지관리 방식	• 주로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	• 주로 담당직원이 수기 관리
원산지검증 경험	• EU, 미국 등 원산지검증 다수	• 미공개
원산지관리의 Key Point	• HS CODE, 협력사 원산지확인, BOM, 원재료 가격, 판가 관리 등	【기업차원의 FTA 활용 역량 강화 부문】
수입시의 FTA 유인	• 수입시 FTA 적용	• EPE 및 관세유예 물품 수입시 FTA 유인 적음
FTA 사후적용 (환급)	• 모든 FTA 1년	• 한베 FTA만 1년, 타 FTA 30일 (단, 수입시 별도 사전신고 필요)
FTA 간이 판정/발급 제도	•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등	【정부차원의 FTA 활용 역량 강화 부문】

□ FTA 발효 현황

- 한국은 현재 베트남과의 협정을 포함한 15개의 FTA,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정을 포함한 10개의 협정을 체결하여 발효중에 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자율발급과 기관발급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국은 각 협정별로 2가지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현재 베트남은 모든 협정에서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다.

□ 발급 기관

- 한국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베트남은 산업무역부(MOIT)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 원산지 관리 주체

- 한국은 주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여 기업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주로 기업 내부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다.

□ 원산지 관리 방식

- 한국은 많은 기업에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산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 하는데 반해 베트남은 대부분 수기로 원산지 관리를 진행 하고 있다.

□ 원산지 관리의 KEY POINT

- 한국은 주로 HS Code, BOM(Bill of Materials), 원재료비, 판매가격 등 원산지 판정에 기초가 되는 DATA 관리 및 원산지 검증 대응을 중점으로 원산지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차원의 FTA 활용 역량 강화 방안으로, 베트남 기업 또한 이와 같은 항목을 중점으로 원산지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수입시의 FTA 유인

- 한국은 수출용 원재료인 경우 FTA 적용을 하는 반면, 베트남의 경우 EPE(Export processing enterprise) 및 관세유예 물품에 해당할 경우 수입시 관세가 유예되므로 FTA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상당 수 존재한다.

□ FTA 사후적용 (환급)

- 한국은 수입신고시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사후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액을 환급해주는 반면 베트남은 한베 FTA 협정문에서만 명시적으로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동안 사후 적용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 FTA는 30일간 사후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FTA 간이 판정 / 발급제도

- 앞서 한국의 FTA 관련 제도에서 소개 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증명서 간이 발급 등의 FTA 관련 제도적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는 정부차원의 FTA 활용 역량 강화 방안으로 베트남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2.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측면 방향 제시

□ C/O 전자발급 제도 도입

- 현재 베트남에서는 C/O 발급신청 절차는 온라인(ECOSYS)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최종 발급 자체는 C/O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을 통해 받는 프로세스로 100%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 이에 따라 100% 전산화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 C/O 발급기관까지의 거리 및 기업 인력 상황에 따라 서류 제출에 따른 제출~입수 소요시간 증가, 서류제출 인력운용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위조 분실에 의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 특히 '15년 이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ECOSYS C/O 발급신청 업로드 기능 확대로, 베트남이 체결·발효중에 있는 FTA 중 EAEV FTA, VC FTA, ASEAN FTA 등에서는 서류제출까지 ECOSYS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 외의 한베 FTA, 한아세안 FTA 등에서는 서류제출은 모두 직접 방문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서류 업로드 처리에 대한 부분도 전 협정으로 확대 적용하여 PAPER JOB을 최소화 한다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C/O 전자발급 제도 도입 시, 수출입기업의 편의 달성을 통한 FTA 활용률 증대효과 뿐만 아니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등 C/O 발급 정부기관의 업무 효율화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C/O 발급 사무소의 증설

- 현재 베트남에서 C/O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성·시에 위치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또는 베트남 상공회의소의 지방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각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C/O 발급 사무소의 수가 부족하고, 더욱이 그 정보 또한 상세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방 일부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우 C/O 발급 사무소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C/O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도 한다.
- 이에 베트남 정부차원에서 C/O를 발급하는 기관의 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전수조사 및 DB화하여 발급기관의 확대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이와 더불어 정부는 사무소 증설에 따른 인력 및 비용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C/O 전자발급제도 도입 등에 대한 대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수출세율 조회 가능 DB 구축 및 웹사이트 등의 운영

- 현재도 각 국의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각종 관세율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나,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국의 세율이 아닌 수출 상대국의 세율 확인의 경로는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수출 지원책의 일환으로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세율 조회 가능 DB 구축 또는 웹사이트 등의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C/O 관련 업무 처리 지침 등 가이드 제공 및 관련 규정 홍보 필요

- 국가 간 FTA C/O HS Code 불일치 이슈 등이 발생하면 C/O 발급 지연, 통관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C/O 발급과 관련 하여 많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 하거나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원산지 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 검토

- 현재 베트남의 경우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대부분의 C/O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수기로 진행되고 있어 원산지 판정에 대한 오류가능성이 높아 신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추후 사후검증 시 잠재적 추징 리스크가 존재한다.
- 따라서 원산지 판정의 시스템화를 통해 원산지 판정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여 추징 리스크를 낮출 필요가 있다.
- 기업측면에서는 시스템화를 통해 수기 원산지 판정 시 대비 원산지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므로 업무 효율성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 타 국가 FTA 관련 법령 검토 또는 도입 방안 검토

- 현재 베트남의 FTA 관련 법령체계는 각 개별 협정별로 산재되어 있어 FTA를 활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법령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FTA를 먼저 도입하여 활용률이 높은 국가의 FTA 관련 법령 체계를 검토하여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점차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는 추세에 따라 전체 FTA에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법 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별 협정이 생길 때 마다 추가 법령을 규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FTA 기본 틀의 미비로 상대국이 제시하는 협정문 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협상의 주도권도 상대국에 내어 줄 수밖에 없는 등의 문제점 발생의 여지가 있다.
- 따라서 한국의 FTA특례법 등과 같이 베트남에서도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보편적인 사항을 국내법령 체계로 수용하는 한편 협정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제정법으

로서 향후 체결되는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국내 시행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 또한, 타 국가에서 FTA 활용률 증대를 위해 법적으로 규정해놓은 제도,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본제출이 필수인데, 한국, 미국 등에서는 법적으로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있는 등의 경우는 수출입 지원 측면에서 통관 지연에 따른 기업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등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타 국가의 선진화된 FTA 관련 제도 등을 베트남의 환경에 맞게 수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수용 가능한 경우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한베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측면 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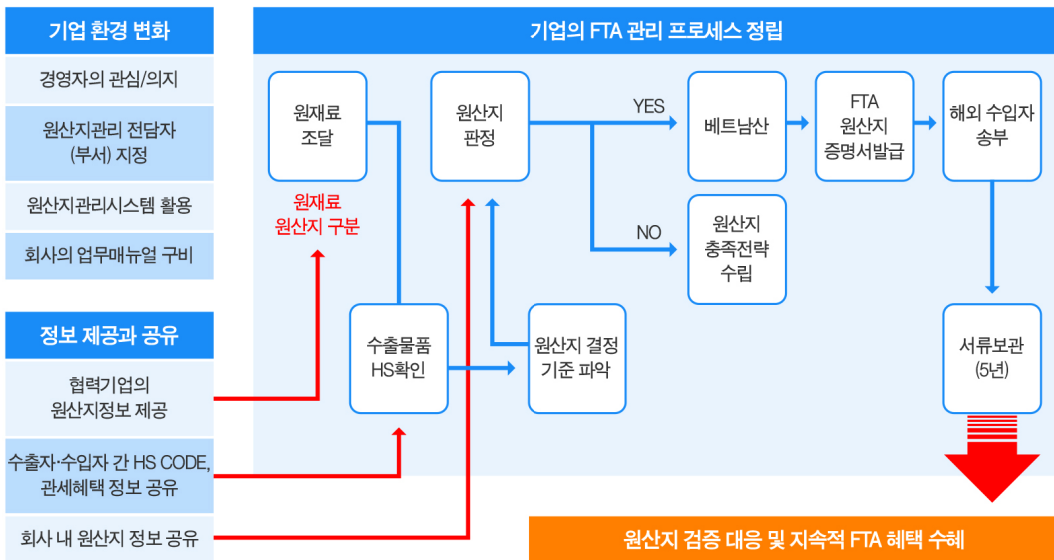
가. 베트남 기업의 FTA 활용 저해 요인 분석

□ FTA에 대한 정보 및 지식 부족

- 전반적인 FTA에 대한 정보 및 지식 부족이 활용 저해 요인으로 분석되며, 특히 FTA를 활용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등 FTA 관련 정보 및 지식 등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 FTA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FTA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관세 혜택, 특혜관세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및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FTA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FTA 활용 저해 요인으로 분석된다.



□ FTA 활용을 위한 투입비용 대비 혜택 부족

- FTA 활용을 위해서 투입되는 시간, 비용 등에 대비해 FTA 관세혜택의 폭이 좁은 경우 FTA 활용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

□ 기업 내부 정보 외부 유출 우려

- FTA 활용을 위해서는 BOM(Bill of Materials)등 기업 내부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민감한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 내부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한 FTA 활용 저해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기업 내·외적 FTA 활용 환경 미정립

- 효과적인 FTA 활용을 위해서는 원산지관리 교육 실시, 원산지관리 업무 매뉴얼 구비 등의 기업 내부적인 환경정립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의 원산지 관련 제도 도입 등 외부적인 환경이 함께 정립될 필요가 있다.

나. 활용 역량 강화 과제 (11가지)

☐ 경영자의 관심/의지

- FTA 활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FTA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 뿐만 아니라 경영자 차원에서
의 관심, 의지 및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 원산지관리 전담자(부서) 지정

-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FTA 업무 특성상 원산지관리 전담자 또는 전담부서를 지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활용

- 보다 효율적인 FTA 활용을 위해서 현재 수기로 진행되고 있는 원산지 관리방식을 시스템
을 활용 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 회사의 업무매뉴얼 구비

-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에서는 별도의 FTA 업무매뉴얼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
에 따라 FTA를 전담하고 있는 담당자의 부재가 발생하게 되면 FTA 업무의 마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개별 기업에 맞는 FTA 업무매뉴얼 작성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
가 있다.

☐ 전담자의 원산지 관리 지식

- FTA 업무는 daily 업무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각 협정마다 규정이 상이하기 때
문에 정기적으로 FTA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FTA 지식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제품 및 원재료의 HS Code 관리

- HS Code는 원산지판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각 기업에서는 생산하는
제품의 HS Code 관리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HS Code 또한 관리가
필요하다.

- 원재료 원산지 및 재료비 관리
 - 생산한 완제품의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각각의 원재료의 원산지 및 원재료비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
-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및 관리
 - FTA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수출입자는 5년간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각 기업에서는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보관 및 관리가 필요하다.
- 회사 내 원산지 정보 공유
 - FTA 업무는 생산, 회계, 구매 등 전사적인 차원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 각 부서 간에 원산지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협력기업-수출기업 간 원산지 정보 공유
 - 정합성 있는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협력업체에서 공급 받은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력기업과 수출기업 간에도 지속적인 원산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 수출입자 간 HS CODE, 관세혜택 정보 공유
 -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인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 수취를 통해 직접적인 관세 혜택을 받는 수입자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수출물품에 대한 HS Code 및 관세율을 확인하는 등 수출입자 간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다. 활용 역량 강화 방안

- 기업 차원의 FTA 원산지 관리 교육 실시
 -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업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FTA 활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법령 및 규정, 온라인 C/O 발급 신청 프로세스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원산지관리 업무 매뉴얼 및 시스템 도입 검토
 - 효율적인 FTA 업무 진행을 위해서 개별 기업에서는 각 개별기업에 특화된 FTA 업무 매뉴

열을 작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수기로 원산지 판정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 가능한 원산지 판정 결과의 오류 방지, 원산지 입증서류 보관의 용이성, 원산지 판정 이력 관리의 용이성 등 시스템 활용시의 장점을 분석하여 원산지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외부 전문가의 활용

- FTA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면 기업 내부적으로 FTA 업무를 진행하는 것보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각 기업에서는 원산지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외부 전문가 및 전문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특히 현재 베트남에서는 한베 FTA를 기준으로 봤을 때, C/O 발급을 위해서는 C/O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입증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제출 후에도 2시간 정도 발급 기관에서 대기하는 등 실질적으로 C/O 신청서 입력부터 서류제출까지 전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이 상당하므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업무의 일부분(예: C/O 신청 관련 자료 제출을 전문적으로 대행 해주는 업체 활용)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FTA 활용 역량 강화의 한 가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회사 취급 제품/원재료의 HS Code MASTER 마련

- 원산지관리를 위해서는 제품과 원재료에 대한 HS Code 관리가 필수적이며, 각 기업에서는 체계적인 HS Code 관리를 위해 HS Code Master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 바이어 및 국내 공급기업과의 HS Code 상호 검증

- 수출입 진행하기에 앞서 바이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거래물품의 HS Code 상호 검증 및 상대국 관세율을 미리 확인하는 등 사전 검토 작업을 통해 FTA 활용을 통한 혜택을 확인하고, 양국 간 HS Code 상이 등으로 인한 통관 지연 등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수출물품 원산지관리 기초정보 - 생산정보 관리

- FTA에서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판정 대상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생산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산 및 제조에 대한 정보 관리는 필수적이다.

- 수출물품 원산지관리 기초정보 - 구매, 판매 정보 관리
 -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물품이 제조되기까지의 전반적인 물품의 흐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원자재 구매 후 입고내역, 재고관리, 완제품 판매 내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 수출물품 원산지관리 기초정보 - 가격 정보 관리
 - 원산지판정(예: 부가가치기준)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인 원자재 구매 가격, 수출(공급)물품에 대한 판매가격 등 기업 내부적으로 물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국내 공급기업의 공급물품의 원산지 관리 방안 마련
 -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뿐만 아니라 원재료 국내 공급기업의 공급물품의 원산지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주기적 원산지 관리 점검 프로세스 마련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FTA 협정세율 적용 이후에도 사후 원산지 검증 등에 대비하여 서류 보관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기업 자체적으로도 정기적인 원산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기업 내부적인 원산지 관리 점검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

2018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8-001	유럽 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2018.1
18-002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8.1
18-003	유럽 소비재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18.1
18-004	한눈에 보는 수출유망국 (의료기기 ③편)	2018.1
18-005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2018.1
18-007	글로벌 로봇산업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2018.2
18-008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해외경쟁력 설문조사 분석	2018.3
18-009	글로벌 가공식품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8.3
18-010	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8.3
18-011	글로벌 메가시티 히트상품-패션	2018.3
18-012	GCC 및 이란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과 주요 인증제도	2018.4
18-013	4차 산업혁명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 - CES 2018에서 본 소비, 일자리, 조직문화의 혁신	2018.4
18-014	아세안 주요국 화장품 유통 및 인증제도	2018.4
18-015	메르코수르 시장이 좋아하는 한국 상품	2018.5
18-016	글로벌 메가시티 히트상품-푸드(食)	2018.5
18-017	트럼프정부 인프라 부흥 정책에 따른 미국 P3 인프라시장 환경과 진출기회	2018.6
18-018	한-중미 FTA 분야별 활용방안	2018.6
18-019	일본 소비자의 변화와 일본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 P2P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2018.6
18-020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발효에 따른 유망분야	2018.7
18-021	글로벌 메가시티 히트상품 - 홈&리빙(住)	2018.7
18-022	미-중 통상분쟁 현황 및 전망	2018.7
18-023	사우디 ICTVA, 아랍에미리트 ICV 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2018.7
18-024	2018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18.7
18-025	2018년 글로벌 비관세장벽 동향	2018.8
18-026	2017/18 무역사기 피해 현황 및 대응방안	2018.8
18-027	NAFTA 재협상 타결과 영향	2018.9
18-028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시사점	2018.10
18-029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협력방안	2018.10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8-030	2018 글로벌 화장품 산업 백서/ 1. 글로벌	2018.10
18-031	2018 글로벌 화장품 산업 백서/ 2. 선진시장	2018.10
18-032	2018 글로벌 화장품 산업 백서/ 3. 주력시장	2018.10
18-033	2018 글로벌 화장품 산업 백서/ 4. 신흥시장	2018.10
18-034	대이란 제재 복원, 중동 주요국 및 기업 반응조사	2018.10
18-035	EU 기금을 활용한 유망 프로젝트	2018.10
18-036	캐나다 전기자동차 부품시장 현황 및 진출전략	2018.11
18-037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할랄시장 진출전략	2018.11

□ GSR (Global Strategy Report)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8-001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산업 협력방안	2018.3
18-002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와 대응과제	2018.4

□ KOCHI 자료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8-001	2017년 대중수출 성과와 2018년 전망	2018.1
18-002	중국 서비스산업의 부상과 진출 확대 방안	2018.4
18-003	양회에 나타난 중국의 2018년 경제정책과 시사점	2018.4
18-004	중국 지방 성시별 진출정보	2018.6

□ GIP (Global Issue Paper)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8-001	이란 핵합의 현황 점검과 우리기업 대응방안	2018.1
18-002	NAFTA 재협상과 멕시코 주요 산업별 영향	2018.9
18-003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18.11

□ GTR (Global Trade Report)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8-001	2017년 12월(연간) 수출 동향	2018.1
18-002	2018년 1월 수출 동향	2018.2
18-003	2018년 2월 수출 동향	2018.3
18-004	2018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8.3
18-005	2018년 3월 수출 동향	2018.4
18-006	2018년 4월 수출 동향	2018.5
18-007	2018년 5월 수출 동향	2018.6
18-008	2018년 3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8.6
18-009	2018년 6월 수출 동향	2018.7
18-010	2018년 7월 수출 동향	2018.8
18-011	2018년 8월 수출 동향	2018.9
18-012	2018년 4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8.9
18-013	2018년 9월 수출 동향	2018.10
18-014	2018년 10월 수출 동향	2018.11

□ KOTRA 자료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8-001	글로벌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전략	2018.1
18-002	한눈에 보는 해외 25개국 취업정보	2018.1
18-003	월드챔프 성공사례집: 2017년 코트라 월드챔프사업 참가기업의 수출 성공스토리	2018.2
18-004	2018-2019 해외전시회 한국관 디렉토리	2018.3
18-005	2017 KOTRA 글로벌 CSR 종합보고서	2018.3
18-006	해외에서 더 가까이 FTA 활용을 도와주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	2018.3
18-007	2017 외국인투자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8.3
18-008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7	2018.3
18-009	2017 IP-DESK 백서	2018.3
18-010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러시아 RUSSEZ : RUSSEZ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2018.3
18-011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Russia RUSSEZ : Consulting for the Development of Russian Special Economic Zones(RUSSEZ)	2018.3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8-012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러시아 연해주 : 루스키섬 개발 전략 및 투자 유치 방안	2018.3
18-013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Russia Primorsky Krai : Russky Island Development Strategy and Investment Promotion Plan	2018.3
18-014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미얀마 : 미얀마 대외무역투자 증진방안	2018.3
18-015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Myanmar : Policy Recommendations for Industry,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in Myanmar	2018.3
18-016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우즈베키스탄 :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방안	2018.3
18-017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Uzbekistan : Policy Consul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Textile Industry in Uzbekistan	2018.3
18-018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이란 1 : 이란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방안 : OIETAI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2018.3
18-019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Iran 1 : Policy Recommendations for Capacity Building for OIETAI in Promotion of FDI to Iran	2018.3
18-020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이란 2 : 이란 ICT 연구개발센터 발전방안 수립	2018.3
18-021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Iran 2 : Securing the Mea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ranian ICT R&D Center	2018.3
18-022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칠레 : 칠레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원격의료 컨설팅 및 모델링 디자인	2018.3
18-023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Chile : Consulta de Políticas sobre Telemedicina Domiciliaria y Diseño de Modelos de Telemedicina para Enfermedades Crónicas en Chile	2018.3
18-024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케냐 : 케냐의 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2018.3
18-025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Kenya : Policy Recommendations for Development Plan of an Industrial Park in Kenya	2018.3
18-026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쿠바 : 쿠바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량강화	2018.3
18-027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Industry&Trade) with Cuba : Capacity Building for Development of the Renewable Energy & Industrial Sectors in Cuba	2018.3
18-028	세계시장, 문을 열면 희망이 보인다: 온라인마케팅·무역사절단·지방지원단 특화사업 우수사례	2018.3
18-029	지사화 우수사례집: 2017 코트라 지사화사업을 통한 20개 기업의 수출 성공스토리	2018.3
18-030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성공사례	2018.4
18-031	주요국별 경제통계 가이드북	2018.4
18-032	SEOUL FOOD 2018 디렉토리	2018.4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8-033	극동러시아 투자사례집	2018.4
18-034	외국인 부동산 취득안내	2018.6
18-035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 해외지재권보호실과 함께	2018.6
18-036	글로벌 IP 이슈페이퍼	2018.6
18-037	중국 위조상품 유통분석 (식품편)	2018.6
18-038	2017 북한 대외무역 동향	2018.7
18-039	외국인투자 Q&A	2018.7
18-040	제13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Official Directory	2018.6
18-041	2017 KOTRA 지속가능경영 & 인권경영 보고서	2018.7
18-042	2017 KOTRA Sustainability & Human Rights Management Report	2018.7
18-043	Labor Law Guide for Foreign Investors (September 2018 Edition)	2018.7
18-044	Invest Korea 2017년도 연차보고서	2018.7
18-045	SEOUL FOOD 2018 결과보고서	2018.8
18-046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가이드	2018.8
18-047	2018 러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18.8
18-049	라오스 투자실무가이드	2018.10
18-050	Invest KOREA Annual Report 2017	2018.10
18-051	한눈에 보는 해외 13개국 취업비자정보	2018.10
18-052	IT기업 일본시장진출 내비게이터	2018.10
18-053	2018 일본취업박람회 디렉토리	2018.10
18-054	2019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018.10
18-055	잘나가는 우리기업 해외투자 성공기: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진출기업지원 우수사례집	2018.11
18-056	2019 해외시장 진출 유망·부진 품목	2018.11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18-001	2018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8.1
18-002	2018 방산·보안기업 지원 사업설명회	2018.2
18-003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연계 멕시코 KSP 에너지·바이오·IT 진출전략세미나	2018.2
18-004	바다로! 대륙으로! 시장을 넓혀라!, 아세안·인도·유라시아 진출 설명회	2018.2
18-005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 31차 수요포럼: 해외 체류시 재난 및 안전 대응 방안	2018.3
18-006	2018 UN 공공조달 플라자 (UN Procurement Plaza 2018)	2018.3
18-007	홍콩의 금융·무역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2018.3
18-008	미국 투자환경 설명회	2018.4
18-009	Global Project Plaza 2018	2018.4
18-010	중국 서비스 수출방법	2018.4
18-011	FTA를 활용한 중남미 진출전략 설명회	2018.4
18-012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전략 포럼	2018.5
18-013	글로벌 메가시티를 사로잡은 히트상품	2018.6
18-014	급변하는 신흥국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에 주목하라	2018.6
18-015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 32차 수요포럼: 해외 프로젝트 보증 및 민간보험 활용방안	2018.6
18-016	'세계로 포럼' 中企 글로벌화, 협업으로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찾다	2018.6
18-017	스마트혁신 홍콩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8.7
18-018	최근 미국 통상정책과 우리의 기회	2018.7
18-019	프랑스 투자환경 설명회	2018.8
18-020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도전 : KOTRA-CAK-KENCA 공동 개최 특별포럼 /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 33차 수요포럼	2018.9
18-021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2018.9
18-022	2018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 포럼	2018.10
18-023	2018 글로벌 화장품 산업 백서: 2018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 포럼 참고자료집	2018.10
18-024	글로벌 신통상포럼	2018.11